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결산공고

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의 결산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일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정정길
울산대학교 총장 오연천

■내부감사의견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감사 박상혁
감사 윤성복

■외부감사의견

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울산대학교 교비회계의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개별 및 합산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학년도의 개별 및 합산운영성과 그리고 개별 및 합산자금흐름의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5월 29일

이현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진호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(울산대학교)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(울산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 2. 울산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8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

감 사 박상혁 (박상혁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523호)

감 사 윤성복 (윤성복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8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

이 사 장 정 정 길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18년 4월 30일

울산대학교

총 장 오 연 천 (인)
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7 년 3 월 1 일부터 2018 년 2 월 28 일까지)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정 정 길 (인) 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울산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7 년 3 월 1 일부터 2018 년 2 월 28 일까지)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<p>지적사항 없음</p>	
<p>피감사기관장 울산대학교 총장 오연천 (인) </p>	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17회계연도 (2017년 3월 1일부터
2018년 2월 28일까지)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 서명 날인은 법인 : 사무국장, 대학교 : 재무처장, 부속병원 :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: 이사장·대학교: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 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 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울산공업학원

울산 대 학 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2017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 0 1 8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

감 사 박 상 혁

감 사 윤 성 복

박상혁
윤성복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울산공업학원 이사장

성 명 정 정 길

정정길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

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울산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

감사 박상혁

감사 윤성복

백성현
(윤성복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울산대학교 총장

성명 오연천

오연천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